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년 08월 21일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회부일자 : 2008년 08월 25일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년 09월 04일(제1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34호

2. 개정이유

7 ~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7. 12. 31.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을 적용하고, 2008. 1. 1.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7 ~ 10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조정(안 제15조 2)
 - : 전방조종자동차를 2008년부터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, 20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과세
 - 2007. 12. 31. 이전 등록 차량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 : 65,000원

- 2008. 1. 1.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, 2009년은 100분의 33을 경감함.

4.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 감면 표준안」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
-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감면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함으로써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으로
-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